

##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(갑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사업연도		연결모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
------	--	--------	--	---------	--

### 1.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

①구 분	②계산기준	③기준금액	④가산세율	⑤코드	⑥가산세액	
무신고	일반	무신고납부세액		20(10)/100	29	
		수입금액		7(3.5)/10,000	30	
	부정	무신고납부세액		40(20)/100	31	
		수입금액		14(7)/10,000	32	
과소신고	일반	과소신고납부세액		10/100	3	
		과소신고납부세액		40/100	22	
	부정	과소신고납부세액		60/100	81	
		과소신고수입금액		14/10,000	23	
납부지연	(일수) 미납세액	( )	2.5/10,000	4		
중간에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			/	/	63	
<b>합 계</b>			/	/	21	
⑦ 법정납부기한				⑧ 납부일		

### 2.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

⑨ 연결법인명	합 계				
⑩ 사업자등록번호					
⑪가산세	⑫ 토지등 양도소득				
	⑬ 지출증빙 등				
	⑭ 미환류소득 가산세				
	⑮ 합 계				

### 3. 연결집단 과소신고납부세액 계산

구분	⑯ 과소신고 납부세액	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				과소신고 납부세액			
		⑰ 계	⑱ 일반	⑲ 부정	⑳ 부정(국제거래)	㉑ 계	㉒ 일반 (⑰×(⑱/⑲))	㉓ 부정 (⑰×(⑲/⑲))	㉔ 부정(국제거래) (⑰×(⑲/⑲))
각 사업연도 소득	과소신고								
	기납부세액 과다 등								

### 작성 방법

※ 연결모법인은 연결집단 및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다음의 가산세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.

1. 이 서식은 연결집단용으로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, 연결자법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.
2.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

가. 무신고가산세: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, 적은 금액은 ( )로 표시하여 적습니다.]

다만,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·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,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·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.

나. 과소신고가산세: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(㉑), 부정과소(㉒) 및 부정(국제거래)㉓로 구분하고, 그 금액이 ㉔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㉕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(㉖), 부정과소(㉗) 및 부정(국제거래)㉘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, ㉙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
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, 적은 금액은 ( )로 표시하여 적습니다.

다만,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,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,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.

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(공제감면세액 및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)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구분란의 '기납부세액 과다 등'의 칸에 적습니다.

다. 납부지연가산세: 미납세액에 가산세율[2.5/10,000, 「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」(대통령령 제29534호로 2019.2.12.공포·시행된 것을 말함) 부칙 제9조에 따라 2019.2.12.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019.2.11.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/10,000]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

3.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: ㉚ 토지등 양도소득란에는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(을)[별지 제76호의17서식(을)]의 ㉛ 가산세액란 중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고, ㉜ 지출증빙 등란에는 같은 서식의 지출증빙등 관련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
##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(을)

※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3쪽 중 제1쪽)

사업연도		연결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	
① 구 분		② 계산기준	③ 기준금액	④ 가산세율	⑤ 코드	⑥ 가산세액
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	무신고	일반	무신고납부세액		20(10)/100	42
			수입금액		7(3.5)/10,000	43
		부정	무신고납부세액		40(20)/100	44
			수입금액		14(7)/10,000	45
	과소신고	일반	과소신고납부세액		10/100	46
			과소납부세액		40/100	47
		부정	과소신고수입금액		14/10,000	48
	부정 공제감면		공제감면세액		40/100	72
	납부지연		(일수) 미납세액	( )	2.5/10,000	51
	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		(배분비율) 배분할금액	( )		65
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					53	
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	무신고	일반	무신고납부세액		20(10)/100	83
			수입금액		7(3.5)/10,000	84
		부정	무신고납부세액		40(20)/100	85
			수입금액		14(7)/10,000	86
	과소신고	일반	과소신고납부세액		10/100	87
			과소신고납부세액		40/100	88
		부정	과소신고수입금액		14/10,000	89
	납부지연		(일수) 미납세액	( )	2.5/10,000	90
	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					91
	부당 공제감면		공제감면세액		40/100	71
지출증명서류		미(허위)수취금액		2/100	8	
지급명세서	미(누락)제출	미(누락)제출금액		10(5)/1,000	9	
	불분명	불분명금액		1/100	10	
	상증법 §82①⑥	미(누락)제출금액		2(1)/1,000	61	
		불분명금액		2/1,000	62	
	상증법 §82③④	미(누락)제출금액		2(1)/10,000	67	
		불분명금액		2/10,000	68	
	「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	미제출금액		5(2.5)/1,000	96	
		불분명등		5/1,000	97	
소 계					11	
주식등 변동상 황명세서	미제출	액면(출자)금액		10(5)/1,000	12	
	누락제출	액면(출자)금액		10(5)/1,000	13	
	불분명	액면(출자)금액		1/100	14	
	소 계					15

※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3쪽 중 제2쪽)

사업연도	연결법인명	사업자등록번호
------	-------	---------

① 구 분		② 계산기준	③ 기준금액	④ 가산세율	⑤ 코드	⑥ 가산세액
주주등 명세서	미(누락)제출	액면(출자)금액		5(2.5)/1,000	69	
	불분명	액면(출자)금액		5/1,000	73	
	소 계					74
계산서	계산서미발급	공급가액		2/100	16	
	계산서 지연발급 등	공급가액		1/100	94	
	계산서가공(위장)수수	공급가액		2/100	70	
	계산서불분명	공급가액		1/100	17	
전자계산서 발급명세	미전송	공급가액		10(3)/1,000	93	
	지연전송	공급가액		5(1)/1,000	92	
계산서 합계표	미제출	공급가액		5(2.5)/1,000	18	
	불분명	공급가액		5/1,000	19	
세금계산서 합계표	미제출	공급가액		5(2.5)/1,000	75	
	불분명	공급가액		5/1,000	76	
소 계					20	
기부금	영수증허위발급	발급금액		5/100	24	
	발급명세 미작성(보관)	대상금액		2/1,000	25	
	소 계					26
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	발급거부(불성실)	거부(발급)금액		5/100	38	
		건 수		5,000원	39	
		소 계				40
	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	(가맹일수) 수입금액	( )	10(5)/1,000	41	
	현금영수증 미발급	미발급 금액		20(10)/100	98	
유보소득 계산 명세서	미제출금액			5(2.5)/1,000	78	
	분불명금액			5/1,000	79	
세금우대자료 미제출·불분명	건수			2,000(1,000)	77	
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	(배분비율) 배분할금액	( )			64	
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	산출세액			5/100	95	
지출증빙 등 관련 가산세 계					66	

**(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)**

구분	⑦ 과소신고 납부세액	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				과소신고납부세액			
		⑧ 계	⑨ 일반	⑩ 부정	⑪ 부정(국제거래)	⑫ 계	⑬ 일반(⑦×(⑨/⑧))	⑭ 부정(⑦×(⑩/⑧))	⑮ 부정(국제거래)(⑦×(⑪/⑧))
토지등 양도소득									

작성 방법

※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을 하며,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(갑)[별지 제76호의17서식(갑)]의 2. 각 연결법인이 부담해야 할 가산세란에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
1.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.
2.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
  - 가. 무신고가산세: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, 작은 금액은 ( )로 표시하여 적습니다. 다만,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·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,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·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.
  - 나. 과소신고가산세: 과소신고 과세표준(㉑)을 일반과소(㉒)와 부정과소(국제거래)(㉓)로 구분하고, 그 금액이 ㉑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㉒란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관련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(㉒), 부정과소(㉓), 부정과소(국제거래)(㉓)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, ㉑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  
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, 작은 금액은 ( )로 표시하여 적습니다. 다만,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,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,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.
  - 다. 납부지연가산세: 미납세액에 가산세율[2.5/10,000, 「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」(대통령령 제29534호로 2019.2.12.공포·시행된 것을 말함) 부칙 제9조에 따라 2019.2.12.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019.2.11.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/10,000]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.
3. 부정 공제감면 가산세: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. 다만,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,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,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. (\* 2013.1.1.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)
4. 지출증명서류 미수취·허위수취 가산세: 미수취 금액에 2/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.
5.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
  - 가. 미제출금액 등에 1/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.
  - 나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/1,000의 가산세율을,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/10,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.
  - 다. 소득세법 §81조①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,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5/1,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.  
\* '19.1.1. 이후 제16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(다만,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2.5/1,000)  
라. 다만,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/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.
6.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
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(출자지분)의 액면금액(출자가액)에 1/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 다만,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/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.
7.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
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, 누락제출,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(출자지분)의 액면금액(출자가액)에 5/1,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 다만,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/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.  
\* 2012.1.1.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, 2013.1.1.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
8. 계산서 및 (세금)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 
미발급 또는 가공(위장)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/100의 가산세율을,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/100의 가산세율을, 계산서·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/1,000의 가산세율을, 미전송·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10(5)/1,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고,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. 다만,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/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.  
\* 2012.1.1.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(위장)수수분부터 2/100의 가산세율 적용, 종전의 경우 1/100의 가산세율 적용  
\*\* 2016.12.31.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(1)/1,000의 가산세율 적용
9.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 가산세 등  
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(2013.1.1.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)에 5/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/1,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10.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
  - 가.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/100의 가산세율(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)을 적용하고,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/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"미가맹기간"/해당 사업연도의 일수"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 \*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.  
나.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'19.1.1.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(10)%를 적용
11.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
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종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/1,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 다만,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/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.  
\* 201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12.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: 배분할 금액(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)에 배분비를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.
13. ■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.